

제205회 영등포구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7. 12. 5.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308호로 2017년 11월 13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과 불일치한 내용은 정비하고 상위
법령과 중복 규정된 내용은 삭제하며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명 띄어쓰기, 잘못된
표기된 용어 수정

나.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재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내용 추가(안 제2조제2항제6호)

다. 상위법 개정사항 및 상위법과 불일치한 조항 정비
(안 제3조제1항, 안 제4조)

라.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 삭제(안 제6조의2,
안 별표 1 서식)

마.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준용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
및 이와 관련된 별지 서식 삭제(안 제7조~제12조, 안 별지
제1호~제6호 서식)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과 불일

치하거나 중복 규정된 조문을 정비하여 현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은

- 조례 제명을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정에 맞게 띄어쓰기 하였으며,
- 안 제1조에서는 입법 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불필요하게 규정된 조문을 정비하여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였으며,
- 안 제2조제2항제6호를 신설하여 재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3조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의 제목을 수정하고 제1항에 상위법 근거조항을 수정하였으며,
- 안 제4조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의 제목을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조문일부를 수정하였고,
- 안 제6조의2 과태료 부과기준은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삭제하였으며,
- 안 제7조의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

법」에 규정하고 있어 조문을 수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안 제8조~제12조의 관련 내용과 안 별지 제1호~제6호 서식은
삭제함.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과 불일치한
규정이나 용어를 정비하고 과태료 부과 징수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하도록 개정·보완한 것
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
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 련 법 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자원순환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자원순환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방침 및 추진목표
2. 폐기물의 발생·재활용 및 재활용산업 현황 등 자원순환 여건에 관한 사항
3. 자원순환 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4. 자원순환 목표를 달성하는데 사용되는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5. 그 밖에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알리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계획에는 투자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21.>

④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자원순환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본계획·시행계획 및 자원순환집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31조(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등의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이하 "재활용사업자"라 한다)에게 자원순환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

며, 필요한 경우에는 차관(借款)을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10.7.23., 2013.5.22., 2014.1.21.>

1. 재활용시설의 설치 사업
2. 재활용지정사업자,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의 자원재활용사업
3. 제25조의3에 따른 에너지회수시설의 설치·운영
4. 제34조에 따른 재활용단지 조성 사업
5.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폐기물 처리
6.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
7. 유통지원센터의 설립·운영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 외에 재활용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5.22., 2014.1.21., 2015.1.20.>

1. 제9조제1항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3항에 따른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자
4. 제14조를 위반하여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5.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한 자
6. 제1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취급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자
- 6의2. 제15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빈용기보증금의 환불문구 및 재사용 표시 등을 하지 아니한 자
7. 제1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미반환보증금을 사용한 자
- 7의2. 제1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표시를 한 자
8.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25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고품연료제품을 수입 또는 제조한 자

10. 제25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1. 제25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12. 제25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고품연료제품 사용 등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3. 제25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관리를 위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14. 제25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5. 제25조의14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관리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지 아니한 자

16.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5.22., 2013.8.13., 2015.1.20.>

1.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36조제3항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신설 2014.1.21.>

[전문개정 2008.3.21.]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본조신설 2009.4.6.]